

#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 
김원태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.
- 서울특별시는 2019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,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, 2022년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어,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.
-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, 안정적인 교육지원 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로 서울특별시가 대안교육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.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  
감사합니다.